

보도자료

(농림부)

- 제공일 : 2006. 2. 22.
- 제공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지도과
- 과 장 : 송 인 호
- 사무관 : 구 돈 회
- 전 화 : (031)446-0128

이 자료는 2006년 2월 23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수입쌀 시판대비 부정유통방지 특별대책 - 3월말부터 대대적인 합동단속 및 감시활동 전개

- 농림부는 금년 3월말 소비자용 수입쌀의 국내시판이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고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쌀 부정유통 특별단속상황실을 설치하고, 시판 초기부터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일제단속에 돌입하는 등 수입쌀 시판에 대비한 부정유통방지 특별대책을 발표하였다.
- 농림부는 3월10일까지 농업인 및 소비자단체와 협의하여 지역별·단계별로 구체적인 부정유통단속 활동계획을 마련하고, 3월말 수입쌀 시판 즉시 원산지단속원 456명(특별사법경찰관 400명 포함)과 명예감시원 17,500명을 총동원 본격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함으로써 부정유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특히 수입쌀이 처음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만큼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공매·낙찰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중간 유통단계는 물론 최종 판매단계 까지 수입쌀 취급업체를 추적 조사하는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 앞으로 추진할 특별단속의 주된 타깃은 소비자 시판용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가공용으로만 공급된 MMA 수입쌀을 불법유통하여 국산이나 시판용 수입쌀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들로, 이를 근절키 위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결과 위반업체는 형사입건 또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예상되는 부정유통 사례

- 20kg 또는 10kg으로 시판되는 수입쌀을 해장 후 국산쌀 포장재에 담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산보다 약간 저렴하게 판매
- 시판용 수입쌀이나 가공용 수입쌀을 대형포장재(40kg PP대)에 담아 원산지 표시없이 국산으로 위장판매
- 시판용 수입쌀 포장재를 도용·제작하여 불법매입한 저가의 MMA가공용 수입쌀을 재포장 후 시판용 수입쌀로 둔갑판매
- MMA가공용 또는 시판용 수입쌀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제조하면서 원료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 등

□ 수입쌀을 포함한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방지는 단속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국민적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명예감시원을 금년말까지 2만5천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은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되 의심나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www.naqs.go.kr』 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원산지위반 신고자에게는 5~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됨

【참고】

수입쌀 시판대비 원산지 부정유통방지 특별대책

추진배경

- 쌀 재협상결과 '05년부터 '14년까지 MMA수입량 중 10%~30%를 소비자 시판용으로 도입
 - MMA 총량 : ('05) 225,575톤 → ('06) 245,922 → ('14) 408,700
 - 시판용 쌀 : ('05) 22,557톤 → ('06) 34,429 → ('14) 122,610
- 소비자 시판용 수입쌀이 국산으로, 가공용 수입쌀이 소비자 시판용 또는 국산으로 둔갑판매행위를 방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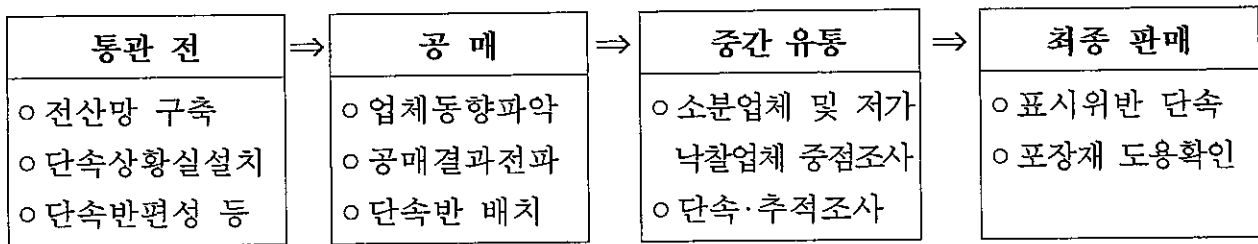
I. 현황 및 문제점

- 소비자 시판용 수입쌀은 전량 국영무역방식으로 쌀 20kg, 10kg포장으로 도입하여 공매를 거쳐 시중에 자유롭게 유통되므로 원산지둔갑 우려
 - 수입량('05) : 22,557톤(중국 12,767, 미국 5,504, 태국 3,293, 호주 993)
 - 양곡중도매인, 대형유통업체, 도매상 등 일정자격을 갖춘 업체에 공매
- MMA수입쌀은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소비자용 수입쌀이 시판됨에 따라 가공용 수입쌀이 불법으로 시판 우려
 - MMA가공용 쌀가격은 국산의 약 30% 수준으로 정부에서 공급
 - 시판용 수입쌀의 공매낙찰가격은 국산 쌀 가격의 약 90% 정도로 예상
- 시판용 수입쌀은 3월하순경에 처음으로 국내 반입되어 공매 예상
 - 구매입찰결과 미국산 1,376톤(1등급)이 최초 도착예정임
 - 국내 도착후 통관·검사 과정을 거쳐 3월말~6월 사이에 공매예상

II. 수입쌀 원산지 부정유통방지 특별대책 주요내용

- 시판 초기부터 집중단속하고 투명한 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정유통이 방지되도록 사전예방과 단속 철저
- 도입된 시판용 수입쌀의 최초 공매낙찰일을 D-day(3월30일 예상)로 정하여 시판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 추진

□ 수입쌀 부정유통예방을 위한 단속시스템 구축



- 농관원 본원(1개소) 및 지원(9개소)에 수입쌀 단속상황실을 설치 운영
 - 공매·유통상황 수집·전파, 단속반 지휘 및 단속결과 신속처리
- 농유공의 전산망을 통한 공매·낙찰정보 실시간 수집체계 구축
 - 시판용 수입쌀 공매물량을 소매상까지 집중 추적 감시
- 수입쌀 시판즉시 발동 가능한 부정유통단속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원단위로 농업인 단체와 협의하여 단계별 구체적인 활동준비(농업인의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

□ 시판초기 3개월간(3월하순~6월) 전국 일제 특별단속 실시

- 지원별로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단속실시
 - 명예감시원 소속단체와 사전협의 단속반편성 및 교육(3.10까지 완료)
- 수입쌀 취급업체를 공매·낙찰부터 최종판매 단계까지 추적조사
 - 대포장(20Kg) 취급업체 및 중간 유통업체를 우선 중점조사
- 단속결과 위반업체는 형사입건 또는 고발 등 강력조치
- 낙찰업체가 적발될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토록 농유공에 통보

- 수입쌀 단속상황은 수시 언론홍보 및 안내전단 배포
 - 단속계획, 주요 적발사항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등 언론보도
 - 주요 위반사항은 TV와 수시 현장 동행취재 보도
 - 원산지표시 안내전단을 제작하여 캠페인 등에 활용
 - 홍보용 안내전단 100만매를 제작하여 배포(2~3월)
- 가공용 수입쌀의 불법유통 및 둔갑판매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구입물량, 판매처, 생산활동 등을 D/B화하여 관리 강화
 - 부정유통 개연성별로 분류하여 취약업체를 선정하여 중점관리
 - 취약업체 : C그룹 평가업체, 사업 부실업체, 원료인수량 급증업체
 - 부정유통행위는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되, 원산지위반은 직접수사
 - 농산물명예감시원에게 양곡감시기능을 부여 양곡명예감시원 역할 병행

Ⅲ.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세부추진계획

1. 부정유통 방지대책 수립

-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특별대책 수립시달(2. 13)
 - 농관원 각 지원에 시달 및 농업인·소비자단체 중앙회 등에 통보
- 농업인·소비자단체와 수입쌀 특별관리를 위한 시도·시군단위 협의회 개최(2.13~2. 24)
 - 합동단속반 편성 및 교육일정, 단속반 배치계획 등 협의
 - 정예감시원 3,000명과 농관원 단속반을 최대한 활용, 합동단속반편성
- 단체별 자체 수입쌀 감시·신고반 편성 및 활동계획 수립(2. 13~2. 24)
 - 명예감시원 14,500명을 동원한 감시·신고반 편성 및 자체 활동계획 수립
-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세부대책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2회 : 2.28, 3.10)

2. 농산물 명예감시원 및 단속원 교육

- 수입쌀 부정유통감시 및 단속을 위한 명예감시원 교육(2. 24~3. 10)
 - 17,500명을 대상으로 수입쌀 및 포장재식별요령, 단속 및 감시요령 등
- 원산지 단속원 교육(2. 24~3. 10)
 - 특별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입쌀 부정유통 특별단속 세부계획 및 지침 등

3. 단속상황실 설치 운영 및 수입쌀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 수입쌀 특별단속 상황실 설치·운영(3.15)
 - 본원 및 지원에 설치하여 공매·유통정보를 수집하여 전파하고 단속반 응원배치 등 특별단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속업무 지원
- 수입쌀 공매 및 단속정보 검색시스템 구축(3.15)
 - 농관원 인트라넷에 수입쌀 단속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검색페이지 구축
 - 전산망을 통한 수입쌀 공매·낙찰정보 실시간 검색체계 구축
 - 낙찰업체별 주소·성명·전화번호, 낙찰현황, 인수도 및 판매계획 등
 - 공매기관에 적발상황을 통보하여 차기입찰자격 등 제한토록 조치

4. 수입쌀 부정유통 특별단속실시

- 업체별 동향파악 및 전파(3,30)
 - 농유평의 전산망을 통하여 낙찰상황을 파악·분석하여 단속반에 전파
 - 낙찰결과를 통보받은 지원 및 출장소는 업체별로 판매처를 조사하여 타 지역으로 판매한 상황은 단속상황실을 통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 MMA 가공용수입쌀 지정업체에 대하여 수입쌀 인수일자, 인수량 등 인수상황을 파악하여, 불법유통여부 조사 및 의심사항 수집 전파
 - 불법유통 소지가 많은 품목(튀밥, 누룽지) 생산업체, 단립종 원료인수량 급증업체, C그룹분류 업체 등 취약업체에 대하여 부정유통여부 집중조사

□ 대대적인 수입쌀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3.31~)

< 주요단속대상 >

- 시판용 수입쌀 낙찰업체, 수입쌀 가공 및 식품제조업체, 양곡도·소매업체, 양곡소분포장업체, 양곡도정업자, 백화점, 할인매장, 일반 슈퍼, 소규모 양곡상, 재래시장 노점상 등

< 예상되는 주요 위반유형 >

- 시판용 수입쌀을 해장 후 국산쌀 포장재에 담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국산보다 약간 저렴하게 판매
- 시판용 수입쌀 포장재를 도용·제작하여 불법매입한 저가의 가공용수입쌀을 재포장 후 시판용 수입쌀로 둔갑판매
- 시판용수입쌀이나 가공용수입쌀을 대형포장재(40kg PP대)에 담아 원산지 표시 없이 국산으로 위장판매
- 시판용 수입쌀이나 가공용수입쌀을 해장하여 산물로 판매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
- 가공용 또는 시판용 수입쌀을 원료로 제조한 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원료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

< 단속방법 >

- 단속 당일 오전 10시까지 출장소에 모여 단속방향·단속정보공유·당일 단속장소 등을 협의 후 해당업체별로 합동단속반을 투입
- 20kg 단립종쌀을 낙찰받은 중간유통업체와 저가낙찰업체(국산쌀 가격의 70% 이하)는 단속능력이 우수한 단속반 우선배치
- 업소에서 우선 판매가격, 포장재 및 표시사항 등을 확인 조사
- 수입쌀 포장재 해장, 소분포장기 사용, 소분포장자재 보관, 포대같이 행위여부 등을 중점조사

※ 수입쌀 부정유통 특별단속기간 중 타 품목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단속추진

5. 명예감시원의 감시신고 및 캠페인 활동 전개

- 명예감시원의 전국적인 감시신고활동 전개(3.31~)
 - 소속단체별로 자체계획에 따른 감시활동 개시
 - 활동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또는 불법유통현장을 목격하거나 의심이 되면 즉시 단속상황실 또는 출장소에 신고(☎1588-8112)
 - 부정유통신고포상금 : 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 캠페인 활동 전개
 - 지원·출장소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명예감시원 소속단체와 협의하여 실시
 - 양곡상 밀집지역과 재래시장 위주로 부정유통근절 캠페인 적극 실시

6. 홍보

-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홍보용 안내전단 제작배부
 - 100만매를 제작하여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소비자 및 판매업체에 배부
 - 소비자 안내용 90만매, 판매업소 안내용 10만매
- 언론보도 추진
 - 수입쌀 단속계획(단속 시작하기 전) 및 단속상황 수시보도 추진
 - 단속계획 및 주요 단속상황에 대하여 보도자료 제공 등 언론보도
 - 주요 위반사항은 TV, 라디오, 신문 등과 수시 현장 동행취재 보도

7. 단속유공자 포상

- 수입쌀 우수단속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농림부 장관표창(10명), 이달의 자랑스런 공무원 등 추천
- 우수명예감시원에 대한 표창수여
 - 대상 : 합동단속유공자 및 감시·신고, 부정유통정보제공 우수자
 - 장관표창 추천(20명, 지원당 2~7명), 원장 감사패 수여(20명)

8. 위반자 처벌

□ 원산지표시 위반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적용 처리

- 허위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병과할 수 있음)
- 원산지 미표시 ⇒ 5만원 이상 1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
- 원산지표시위반자(허위표시,미표시) ⇒ 시정명령 처분
- 대형 또는 상습위반자 ⇒ 위반사실 공표명령 처분
 - 위반물량 100톤 이상, 위반금액 10억원(가공품 20억원) 이상, 적발일 현재 최근 1년 동안 3회차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 불법유통, 과대광고 등 위반시 『양곡관리법』 적용처리

- 지정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자(불법유통)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양곡 시가 환산가격의 5배이하 벌금
- 수입양곡 취급관련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과대 또는 허위광고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곡의 허위·과대표시 또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